도시교통

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

근 거	○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	
목 적	○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	
지원내용 (사업내용)	○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-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 왕복 4㎞이상일 경우 산출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가능	
지원대상 (사업대상)	○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에 적합한 바이오가스를 포함하며, 공차운행거리 보조금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가 신청 가능 ※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, 환경부고시 제2017-73호(2017.4.13.)	
시행주체	○ 4개 시(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)	
신청기간	○ 시 예산 소진시까지(상시)	
신청자격	[ ] 개인	[✔] 법인, 단체, 기업 등
신청방법	○ (방문신청) 각 시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, 계획 수립 후 보조금 지원	
제출서류 (구비서류)	○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(각 시청 담당부서 문의 필요)	
문 의 처	○ 창원시 교통정책과	☎ 055-225-3784
	○ 진주시 환경관리과	☎ 055-749-8643
	○ 김해시 기후대응과	☎ 055-330-8755
	○ 양산시 기후환경과	☎ 055-392-2604
도 담당부서	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	☎ 055-211-4115